##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59 발의연월일: 2022. 11. 22.

발 의 자:김한정ㆍ김경만ㆍ김성환

김용민 · 김정호 · 김회재

박영순 · 신영대 · 양원영

이동주 • 이용빈 • 이용선

이장섭 · 정일영 · 홍정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 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 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 년 8월 4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착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용수 취수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및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였음.

### 주요내용

- 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최장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19조제4항)
- 나. 인·허가 처리계획을 처리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제4항의 처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봄(안 제19조제5항).
- 다.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 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7조의2).
- 라.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

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4호)

마.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 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휴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후단 중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처리하여야"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로부터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의한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 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제1항제1호 중 "계약학과 등"을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등학교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조정

제37조의 제목 중 "특성화대학"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을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특성화대학등"으로 한다.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

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
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생	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2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	
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	
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	
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	
허가권자는 <u>특별한 사유</u> 가 없	대통령령으로 정하
으면 인·허가등을 <u>처리하여야</u>	<u>는 특별한 사유</u>
한다.	<u>지체 없이 처리하여야</u> -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4
제출한 인ㆍ허가권자는 제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인ㆍ허가	<u>15일</u>
등의 처리결과를 사업시행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	

·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 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u>30일</u> 이내의 범위에 서 한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략)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2. (생 략)
- ② ~ ⑧ (생 략)

15일
,
⑤ 인ㆍ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
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
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게 회신하지 않거나, 제4항
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
의 처리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
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60
일이 지난 날로부터 인ㆍ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
<u>다.</u>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ll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①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저 특례) ①·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3	
저	1항
<u>각 호의 사업</u>	
	ıı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
인 산업공급망 확보, 미래 경
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수 있다.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 지 지원 사업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 발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 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제무건전성 확보, 사업의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7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 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 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산업체 수요와 연계된 계약
     학과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
     력양성사업
  - 2. ~ 4. (생 략)
     ② (생 략)
  - 1. ~ 3. (생 략) <신 설>
-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u>특성화</u> 지 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전 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 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
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
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1계약
학과 및 이공계학과, 「초・중
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
항 각 호에 따른 고등학교 등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 정원
<u>조</u> 정
<u>~~~</u>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
재37도(국기옵단전력 단표 <u>극 8</u> 되 대학등의 지정 등) ①
- n · 1 O - 1 · 1 O O / \1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 단전략산업 <u>특성화대학 또는</u> <u>특성화대학원을</u> 지정할 수 있 다.

- 1. ~ 5. (생 략) <u><신 설></u>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u>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성</u> <u>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u>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특성화대
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
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특성
화대학등"이라 한다)를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②
<u>특</u> 성화대학등
<u>.</u>
③특성
 화대학등
·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u> </u>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 에 관한 특례) ① 전략산업등 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 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

<신 설>

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의 기구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한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 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① 「고등교육법」 제14 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 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

<u>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u> 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u>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대 학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 는 교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